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고,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‘소득월액보험료’의 용어를 ‘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’로 변경하는 등의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,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,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3. 7.~ 4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제10호 중 “제41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2항”을 “제41조의2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“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2항”을 “영 제41조의2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2호 중 “소득월액의 조정 신청,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”을 “소득월액의 조정 신청”으로 한다.

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(이하 “소득월액”이라 한다)”을 “소득월액(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,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

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보수외소득”을 “보수 외 소득”으로, “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”를 “산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

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. 다만,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소득월액보험료”를 “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) ①·② (생략)	제2조(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	③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제9호에도 불구하고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1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(이하 “사업소득등”이라 한다)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	10. ----- ----- ----- 제41조의2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1.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제1항제2호	11. ----- 영 제41조의2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

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
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
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
하는 달의 말일

12.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
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
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
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
액의 조정 신청, 영 제42조제2
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
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
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
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
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
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

④ (생 략)

제44조(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
준)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
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
액(이하 “소득월액”이라 한다)
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
산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
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「소
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
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

12. -----

----- 소득월액
의 조정 신청 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4조(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
준) ① -----
소득월액(직장가입자의 경우에
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
외 소득월액을 말하고, 지역가
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
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) --

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.

1. ~ 6. (생략)

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③ 영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.

제47조(보험료의 분기별 납부) ①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

-- 보수 외 소득-----

----- 산출한다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. 다만,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.

제47조(보험료의 분기별 납부) ①

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료(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<u>소득월액보험료</u>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분기별로 납부하려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<u>보</u> <u>수 외 소득월액보험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